## [양식 제4호]

입	양	신	고	서
(	ų	1	월	일)

※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 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(	( 년 월 일) 국에는 영화(이도 표시하기 마립니다.																
구분			양		부	부		야				모					
양 친 등 기		한글	( \	3) /	(명)	본(한지	-)			한글	(성)	/ (명)		본(한자)			
	성명	한자	( / ( / )	3) /	(평)	출생연월	일			한자	(성)	/ (명)		출생연월일			
		주	주민등록번호			_	주민등록			록번호		_					
	등 록 기준지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
양	성명	한 <sup>-</sup>	글 (성) /(			(명)	명) 본(한		<u> </u>			주민등		_			
	78 6	한.	자	(성)	/ (	(명)	성	별	[]남	20	겨 =	출 생 연	월 일	!			
	등록기	기준지															
	주	주 소															
③양자:	ما ما	부		성명					준지								
									·번호  スコ					_			
친생부도		Ī	2	성명			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						_				
<u>(4)</u> 7]	타사항	-					ו ע	0 7	건포								
⑤입양허가법원								ਨੇ	  가	일자		년 4	실	일	]		
6	부	성	명									l .			<u>୍</u>	또는	서명
	모	성	명				① 또는 서								서명		
동 의	부모	고 동의를 갈음하는 심				는 심판 법	법원					심판	년		월	일	
자	부모:	모의 동의를 받을			수 없는 사유												
	양자	양자의 배우자					Ć	① 또는	- 서명	주기	민등	록번호		-	_		
⑦ 신고인	양부	양부							(	① 또는	를 서	명 전 이미	화 메일				
	양모	-							(	① 또는	를 서	명 전 이미	화 메일				
	양지	:}-			(6				① 또는	를 서	저	화					
				1	부		(6	① 또는	를 서	저	화						
	법 정대리인		부	모	모					①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							
			[	 ② <b>후</b> で	린인				(	① 또:	를 서	저	화				
⑧신고인 출석여부 ① 양부					2	양모	3 %	·	4			①부 ②5	2 3	 )후?	년인)		
⑨제출인				성『	평							록번호		-	_		

<sup>\*\*</sup>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## 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주민등록번호: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및 ②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 -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
  -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
- ⑤란: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,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.
- ⑥란: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  -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.
  -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⑦란: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하며,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'영표○'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⑨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 첨부서류

##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
- 1.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(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, 피성년 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).
- 3. 입양동의서 1부(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,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 서의 "동의자"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.
- 4.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
  -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(예시 : 주민등록 말소· 거주불명 등본)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 -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: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 -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: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,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.
-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 -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
  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  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 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)
   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 -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)
  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  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  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  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※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